

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

체납자가 은닉한 현금·예금·주식이나
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재산을
관세청(세관)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,
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
※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



징수금액	지급률
2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	100분의 20
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	1억 원 +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
2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	3억2천5백만 원 +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
30억 원 초과	4억2천5백만 원 +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

전화신고

- 국번없이 125
-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-510-1332
-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-620-6391

인터넷 신고

- 관세청 누리집 www.customs.go.kr
- ➡ 국민참여 ➡ 신고마당 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

우편(서면)신고

-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
-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

※'22.2.15일 시행



관세청